

NEWSLETTER

디지털자산 센터 | Digital Assets Center

CONTACT



변호사 윤종수
T: 02.6386.6601
E: jay.yoon@leeko.com



변호사 홍은표
T: 02.772.4404
E: eunpyo.hong@leeko.com



변호사 최우영
T: 02.772.4921
E: wooyoung.choi@leeko.com



변호사 이한경
T: 02.2191.3164
E: hankyung.lee@leeko.com



변호사 한서희
T: 02.6386.6297
E: suhhee.han@leeko.com



변호사 주성환
T: 02.6386.6345
E: seonghwan.ju@leeko.com

토ken증권 제도화를 위한 개정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토ken증권의 발행 및 유통(STO)을 위한 (1)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개정안 및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6. 1. 1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2023년 2월 조각투자와 같은 다양한 권리의 증권화를 지원하고,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증권의 발행 및 유통을 허용하기 위하여 「토ken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위 정부의 정책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전자증권법	분산원장의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산원장 및 분산원장등록주식등 정의 신설 ■ 분산원장 이용 근거 마련 ■ 분산원장 이용절차, 작성 및 관리 책임 등 규정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및 계좌관리기관으로 포섭 ■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등록 절차, 등록요건 등 ■ 초과분 해소를 위한 재원 적립의무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산원장에 기재된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투자계약증권의 유통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의 유통에 관한 규정 적용
	장외거래증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외거래증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근거 마련 ■ 장외거래증개업자에 대한 일부 규정의 적용배제 ■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 금액 제한

이하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I. 개정 전자증권법의 주요 내용

1. 분산원장의 이용 근거 등 마련

1) 분산원장 및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의 도입 (제2조)

개정 전자증권법은 “분산원장”을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하여 시간순서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하여 무단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장부 및 그 관리체계”로 정의하였습니다(제2조 제3호의2). 또한 “분산원장 및 그 연계장부인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을 “분산원장등록주식등”으로 규정하여(제2조 제4호의2), 전자등록의 방식으로 분산원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행 전자증권법은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과 계좌관리기관(금융기관)의 중앙집중형 전자등록계좌부에 기재하는 방식의 전자등록만 허용하여,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무권화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전자증권법 개정 전까지 조각투자 증권을 토큰으로 발행하더라도 토큰과 1:1로 매칭되는 전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위 개정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하여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에 대하여도 전자증권법상 효력이 인정되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 개정 전자증권법은 전자등록의 대상인 “주식등”에 투자계약증권을 포함하였습니다(제2조 제1호 하목).

2) 분산원장의 이용 관련 (제23조의2)

개정 전자증권법은 계좌관리기관 및 전자등록기관으로 하여금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23조의2 제1항). 다만 분산원장 이용이 가능한 주식등 및 이용가능한 분산원장의 요건은 대통령령에 의하여 구체화될 예정입니다(제23조의2 제2항).

한편, 분산원장인 전자등록계좌부의 작성 및 관리책임은 계좌가 개설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부담하도록 규정하였고(제23조의2 제3항), 전자등록기관이 총량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분산원장을 이용하려는 계좌관리기관은 4주 전에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도록 하며, 전자등록기관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고객계좌부를 열람·출력·복사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제23조의2 제4항, 제5항).

또한, 전자등록기관은 권리자 전원의 동의를 얻거나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 등에는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을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 아닌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23조의2 제6항).

2.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도입 및 등록요건

1)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도입 (제2조, 제19조)

개정 전자증권법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분산원장을 이용하여 자신이 발행하는 주식등을 전자등록 하려는 자로서 제19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로 정의하면서(제2조 제8호), 전자증권법상 계좌관리기관의 한 유형으로 포섭하였습니다(제19조 제6호의2).

이에 따라 발행인이 직접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여 자신이 발행하는 증권을 분산원장에 등록 및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증권사 등을 통해 중앙 집중적으로 전자등록 및 관리하지 않을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한편,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제23조의2 제1항 단서),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73조 제4항 제6호).

2)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등록 관련 (제19조의2 ~ 제19조의4)

개정 전자증권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서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는 절차 및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등록요건에 대하여 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제19조의4).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등록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10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하며, (2) 권리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충분한 인력, 전산설비 기타 물적 설비를 갖추고, (3)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및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하여야 하며, (4)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이용하려는 분산원장이 전자등록에 적합하여야 하고,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 및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제19조의2 제2항).

3) 초과분 해소를 위한 재원 적립의무 (제42조의2)

현행 전자증권법 제42조에서는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종목별 총수량 또는 총금액이 고객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목별 총수량 또는 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해소할 의무 및 원리금, 배당금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자증권법 제42조의2에서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위 의무 이행을 위하여 전자등록의 안정성확보를 위한 재원 적립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분산원장 기재 개인신용정보 관리 (제23조의3)

분산원장에 기재된 개인신용정보는 물리적 파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 전자증권법 제23조의3에서는 해당 개인신용정보에는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파기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를 적용하지 않고, 대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관리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75조 제1항 제2호의2).

4. 시행일

개정 전자증권법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된 후, 그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7년 1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II. 개정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

1.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유통 규정 적용 (제4조 제1항)

개정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 등을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보는 기준의 단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계약증권에도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유통에 관한 규정들이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투자계약증권과 같은 비정형적 증권에 관해서도 다수 투자자 간에 거래되는 유통시장을 형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금번 개정을 통하여 그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2.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관련

1)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의 근거 마련 (제166조 제1항)

개정 자본시장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이하, 장외거래 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의 경우에도 다수의 당사자 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166조 제1항).

과거 자본시장법 및 그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매매하는 방법으로 장외거래를 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한국금융투자협회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따른 매매거래에 관해서만 다수의 당사자 간 장외거래를 허용하였습니다.

그런데 2025. 9. 23.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 인가업무단위를 신설하였고(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8조의2, 인가업무단위: 2o-12-1, 2o-12-2, 2o-14-1 및 2o-14-2), 이러한 경우에도 다수 당사자 간의 장외거래를 허용하였습니다(시행령 제177조). 그리고 위 개정에 따라 현재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인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아가, 금번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다자간 장외거래를 하는 것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장외거래중개업자에 적용되는 규정, 제한 등을 보다 구체화한 것입니다.

2) 장외거래중개업자에 대한 적용배제 규정 (제166조 제2항)

인가를 받은 장외거래중개업자에게는 그 인가 업무에 관하여 업무 단위 추가등록(제16조의2), 겸영업무(제40조), 투자권유 위탁(제51조~제53조), 신용공여(제72조)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제166조 제2항). 이는 장외시장에서의 다수 투자자 간 증권 거래 중개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불필요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3) 일반투자자 장외거래 금액 제한 (제166조 제3항)

개정 자본시장법은 일반투자자가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하여 장외거래 할 수 있는 금액을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증권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구분하여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대통령령에 의하여 정해질 예정입니다.

3. 시행일

개정 자본시장법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된 후, 그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장외거래중개업자에 관한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III. 시사점

지난 2023년 금융당국이 토큰증권 발행·유통 체계 정비를 추진한 이후, 이번 개정을 통하여 토큰증권 발행·유통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등으로 제한적으로 도입되었던 토큰증권이 본격적으로 발행·유통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졌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나아가 실물자산토큰화(RWA)를 위한 규제체계가 구축되어, 본격적으로 토큰을 활용한 자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토큰증권 시장의 플레이어들은 시장 확대 및 개편을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전자등록의 방식으로 분산원장을 도입하고자 하는 계좌관리기관은 이용할 수 있는 분산원장의 요건, 이를 위한 절차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으며, 토큰증권을 직접 등록·관리하고자 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등록요건을 검토하고 준비하여 사전에 등록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금융회사와 유사하게 대주주·임원 적격성 제도가 도입되었으므로, 이와 관련한 결격사유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등록에 요구될 인력, 전산설비 기타 물적 설비 요건의 수준을 확인하여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분산원장의 요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 구체적인 등록요건 등은 대통령령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할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전자증권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단위가 신설되었고, 현재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인가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금번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단위 역시 신설될 수 있어 보이고, 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도 자본시장법령상 유통에 관한 규제가 모두 적용되게 되므로 투자계약증권의 유통 방법, 절차, 제한 등에 관하여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자산 센터는 토큰증권, 조각투자,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관련 다양한 법률을 이슈 및 쟁점에 대해 풍부한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전문적 검토나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자산 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뉴스레터 더 보기](#)

**Lee
&KO** 법무법인(유) 광장

서울 | 서초, 서울 | 판교 | 북경 | 호치민시티 | 하노이
02.772.4000 | mail@leeko.com | www.leeko.com